

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 설치 및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93
----------	------

2021년 7월 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5월 25일 시장 발의
2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3. 상정일자 :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6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유미 시민건강국장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를 설치·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집단교육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

나.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

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 설치·운영

- 소재지 : 서울시 (예정)
- 시설규모 : 165㎡ 이상
- 공간구성 : 상담실, 교육실, 대기실, 사무실 등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-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필요성

-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6.5%(중앙값 5.5), 우울증상유병률 3.7%(중앙값 2.8), 스트레스 인지율 27.2%(중앙값 25.2)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 지표가 전국 중앙값보다 높아 대책이 요구됨
-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의 연간 이용인원이 16,450명('18년) → 17,359명('19년) → 19,051명('20년)으

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높아 심리지원 센터 추가설치를 통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확충 및 지역별 심리 서비스 제공 불균형 완화가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·양성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
-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기간 : '21. 9. ~ '22. 8.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바. 소요예산 : 128,360천원('21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정신건강복지법

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 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육·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센터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심리지원센터(가칭)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법적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서,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¹⁾하고 있음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²⁾하였음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2)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7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

- 현재 심리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접수단계부터 센터 이용의 적합성에 대한 선별을 시행하고 있고, 상담진행 단계부터 상담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검사 등을 실시해 대상자에게 개입을 실시하고 있음.
- 이처럼 심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개입을 요하는 업무로 본 동의 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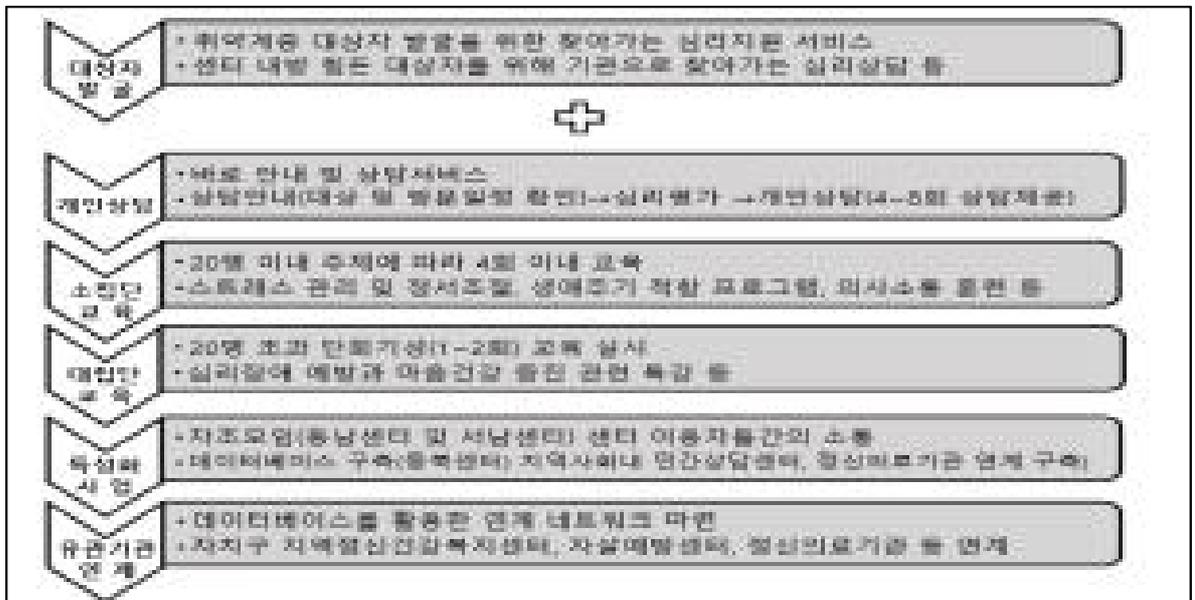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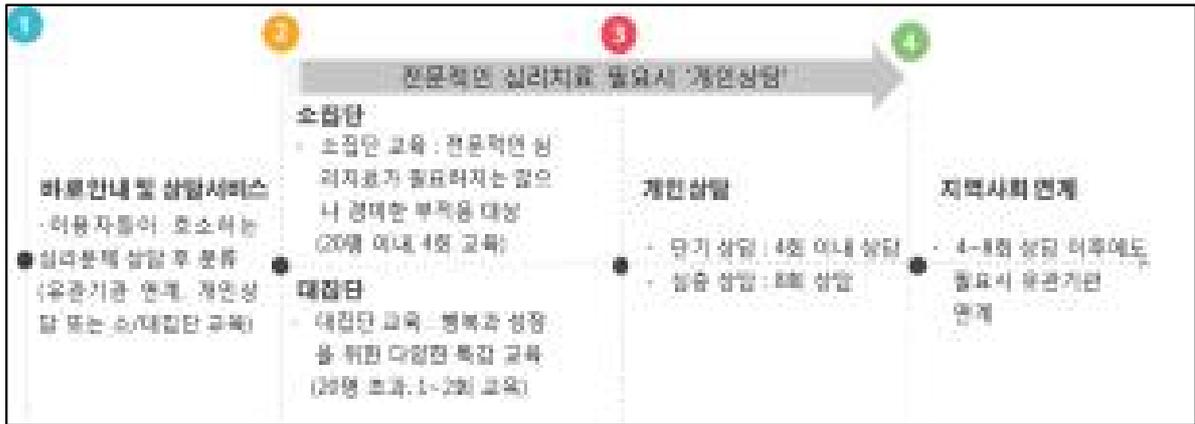
나.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

-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장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권역별 3개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.

<표>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

연번	시설명칭	운영주체	주소	시설규모	주요시설
1	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	사단법인 아이코리아	송파구 총민로6길 17 202호	379.8㎡	사무실, 상담실, 대기실, 집단상담실 등
2	서울심리지원 동북센터	덕성 여자대학교	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	205.7㎡	
3	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	사단법인 항공기소음	양천구 신월로 176 3층	166.2㎡	

- 심리지원센터의 주요한 업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별·집단별 심리상담, 심리교육, 집단활동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음.



[그림] 서울심리지원센터 서비스 흐름도

- 서울시 3개 심리지원센터의 이용 연인원은 2018년 16,450명, 2019년 17,359명, 2020년 19,051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
〈표〉 서울시 심리지원센터(3개소) 최근 3년 이용실적

(단위 : 명, %)

연도	구분	목표	실적	개인상담	소집단 교육	대집단 교육	특성화 사업	기타	연계건
2018	살원	7,500	7,647	2,854	1,321	1,223	432	1,515	302
	연원	-	16,450 (100.0)	8,463 (51.4)	2,674 (16.3)	1,223 (7.4)	432 (2.6)	3,356 (20.4)	302 (1.8)
2019	살원	10,000	10,380	5,925	1,613	1,302	165	1,062	305
	연원	-	17,359 (100)	11,751 (67.7)	2,760 (15.9)	1,302 (7.5)	165 (0.9)	1,062 (6.1)	305 (1.8)
2020	살원	10,500	12,911	4,063	3,871	2,514	183	1,193	1,087
	연원	-	19,051 (100.0)	8,989 (47.2)	5,028 (26.4)	2,514 (13.2)	240 (1.3)	1,193 (6.3)	1,087 (5.7)

- 현재 서울시내 3개 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대상자 중 75%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연계된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어, 심리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관리 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자원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※ 심리지원센터 동북센터의 2020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, 상담팀 이용자 514명 중 143명(28%)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〈표〉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동북센터 사용자 중 취약계층³⁾ 수

분류	인원수
제1호 (저소득자)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	35명
제3호 (장애인)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	1명
제7호 (가정폭력 피해자)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	6명
제8호 (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) 및 제 12호(기타)의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	92명
제9호 (결혼 이민자)	2명
제11호 (범죄구조피해자)	7명

3)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분류에 따르며 전체 이용자는 514명임.

3 종합의견

- 서울시는 3개의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 운영해오고 있으나, 지역내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 부족, 민간 심리지원센터와의 차별성 부족, 공공성 강화 방안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.
- 현재 시민건강국에서는 서울형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, 2021년 11월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해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개선할 계획에 있음.
- 동 위탁사무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나,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향후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리·감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를 설치·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집단교육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
- 나.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시설 및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(가칭) 설치·운영

- 소재지 : 서울시 (예정)
- 시설규모 : 165㎡ 이상
- 공간구성 : 상담실, 교육실, 대기실, 사무실 등
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 -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필요성

-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6.5%(중양값 5.5), 우울증상유병률 3.7%(중양값 2.8), 스트레스 인지율 27.2%(중양값 25.2)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 지표가 전국 중양값보다 높아 대책이 요구됨
-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의 연간 이용인원이 16,450명('18년) → 17,359명('19년) → 19,051명('20년)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높아 심리지원센터 추가설치를 통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확충 및 지역별 심리 서비스 제공 불균형 완화가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·양성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
-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기간 : '21. 9. ~ '22. 8.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바. 소요예산 : 128,360천원('21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정신건강복지법

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육·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센터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이지인 (☎ 2133-7555)